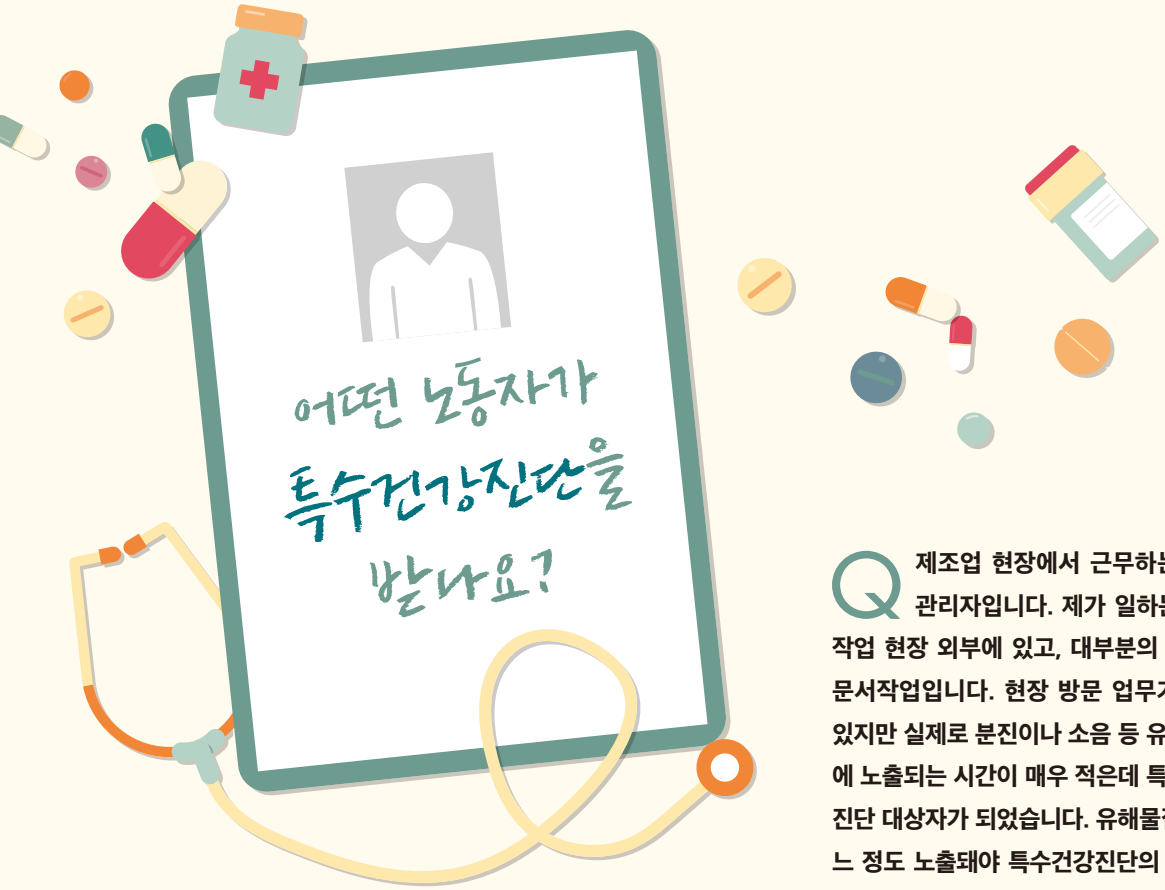

Q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계 관리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작업 현장 외부에 있고, 대부분의 업무가 문서작업입니다. 현장 방문 업무가 가끔 있지만 실제로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우 적은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돼야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시간 정도만 노출되어도 그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A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출시간에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인자는 화학적인자 164종/물리적인자 8종/분진 7종/야간작업 2종 등 총 181종이며, 근무하시는 제조업 현장도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유해물질별 시기와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처럼 근무장소가 분리된 상시노동자(사무직, 관리직)는 유해물질 노출이 적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서의 출입이 잦거나 정기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이 된다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물질 노출이 매우 적거나 기준 미달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련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02조 제1항 [별표 23]>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4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